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 및 제도의 활성화 · 효율화를 위해 계급별 응시자격 확대,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및 평가관^{실기·면접} 인원 조정하고,

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 · 일관성 확보 및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보에 따라 평가관^{실기·면접} 협의체 신설, 관련 교육 · 연구 등 제도 정착 실효성 제고

◇ 주요내용

가. 시 · 도에 따라 소방경(중급)이 선착대장 역할 수행하는 경우 다수, 이를 반영하여 소방위 대상의(선착대장 수행자) 교육 · 인증평가에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의 경우도 응시 가능 토록 조정하되, 이 경우 접수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 수행자만 해당됨을 명시(안 제 4조제1호)

나. 자격인증제 활성화, 응시 기회 확대 위해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을 ‘해당 · 직전계급 1년 이상’에서 ‘전체 계급 1년 이상’으로 조정함(안 제8 조)

다. 실기 · 면접평가의 내부평가관 자격에 ‘자격인증 취득자를 추가’하

고 실기평가관 합의에 의거 불합격자를 최종 결정토록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라. 실기·면접평가관 구성 시, 혼선 없도록 실기평가관(3인 이상)·면접평가관(1인 이상) 인원을 명확히 지정(안 제11조)

마.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·일관성 확보 및 우수 평가관 관리·활용 위해 실기·면접평가관 협의회 신설(제11조의2 및 제11조의3)

바.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119 대응국 소속부서장(4명)에서 ‘대응총괄과장, 자격인증제 운영기관(9) 주무과장으로 조정’하여 전국 운영기관 실무 적용 및 제도 활성화 추진(안 제18조)

사. 자격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항목에 「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7 제9호 가목에 따른 “대통령 경호처 소방대”를 추가(제8조 제1호관련 별표1)